

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배경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 출 연 월 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 이유

「합성생물학 육성법」(법률 제20923호, 2025. 4. 22. 공포, 2026. 4. 23. 시행) 및 「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 (제2조)

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6. 4. 1. ~ 4. 16.)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합성생물학 육성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합성생물학 육성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2. 「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5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3. 「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